



제418회국회(정기회)
제7차 정무위원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법원의 사전 허가를 얻어 통보유에 요청〉
■ 이기헌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3957호)

2024. 11.

정 무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최 병 권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법원의 사전 허가를 얻어 통보유예 요청	3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이기현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4. 9. 12.
3. 회 부 일 : 2024. 9. 1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사기관이나 국세청 또는 감사원 등(이하 ‘수사기관등’이라 한다)이 금융회사등에 거래정보등을 요구하면서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사법절차 및 행정절차 진행을 방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는 수사기관등의 요청에 따라 금융회사등이 명의인에게 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 통보를 예외적으로 유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통보를 유예할 수 있는 사유에 대하여는 거래정보등의 요구자인 수사기관등만이 판단하고 있어 그 사유에 대한 객관적 검증없이 통보 유예가 남용되고 있음.

이에 수사기관등이 통보 유예를 요청하는 경우 그 사유에 대해 미리 법원의 허가를 얻도록 함으로써 금융거래의 비밀을 두텁게 보호하

려는 것임(안 제4조의2제4항 신설).

Ⅲ. 검토의견: 법원의 사전 허가를 얻어 통보유예 요청

□ 개정안은 수사기관, 국세청 또는 감사원 등 거래정보등의 요구자(이하 ‘수사기관등’)가 금융회사등에 통보의 유예를 요청할 때에는 미리 법원의 허가를 얻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의2(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의 통보) ① ~ ③ (생략) <u><신설></u> ④ (생략) ⑤ 다음 각 호의 법률의 규정에 따라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u>제4항까지</u> 의 규정을 적용한다. 1. ~ 6. (생략) <u><신설></u>	제4조의2(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의 통보)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u>거래정보등의 요구자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에 통보의 유예를 요청할 때(법원이 요청하는 때를 제외한다)에는 미리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u>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⑥ ----- ----- ----- <u>제5항까지</u> 의----- ----- 1. ~ 6. (현행과 같음) ⑦ <u>제4항에 따른 법원의 허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다.</u>

□ 현행법¹⁾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명의인의 동의를 받아 거래정보등을 제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금융거래의 비밀보장) ①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중략)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거래정보등”이라 한다)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거래정보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른 거래정보등의 제공
2.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 등의 제공과 소관 관서의 장이 상속·증여 재산의

공하거나,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의 영장 발부, 상속·증여 또는 탈세 혐의 관련 자료 확인, 국정조사에 필요하여 거래정보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제공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공한 거래정보등의 주요 내용, 사용 목적, 제공받은 자 및 제공일 등을 명의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

- 이는 명의인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명의인이 자신의 상황을 인지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기관이 법적 근거를 가지고 거래정보등을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하려는 취지임.

확인,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의 확인, 채납자(채납액 5천만원 이상인 채납자의 경우에는 채납자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재산 조회, 「국세징수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질문·조사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거래정보등의 제공

가. 채납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나. 채납자의 6촌 이내 혈족

다. 채납자의 4촌 이내 인척

3.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정조사에 필요한 자료로서 해당 조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금융감독원장(「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원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예금보험공사사장(「예금자보호법」 제3조에 따른 예금보험공사의 사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거래정보등의 제공

4. 금융위원회(증권시장·파생상품시장의 불공정거래조사의 경우에는 증권선물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금융감독원장 및 예금보험공사사장이 금융회사등에 대한 감독·검사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거래정보등의 제공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제3호에 따라 해당 조사위원회에 제공하기 위한 경우

가. 내부자거래 및 불공정거래행위 등의 조사에 필요한 경우

나. 고객예금 횡령, 무자원(無資源) 입금 기표(記票) 후 현금 인출 등 금융사고의 적발에 필요한 경우

다. 구축성예금 수입(受入), 자기앞수표 선발행(先發行) 등 불건전 금융거래행위의 조사에 필요한 경우

라. 금융실명거래 위반, 장부 외 거래, 출자자 대출, 동일인 한도 초과 등 법령 위반행위의 조사에 필요한 경우

마.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업무 및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금보험공사사장이 예금자표(預金者表)의 작성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이하 생략)

제4조의2(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의 통보) ① 금융회사등은 명의인의 서면상의 동의를 받아 거래정보등을 제공한 경우나 제4조제1항제1호·제2호(중략)·제3호 및 제8호에 따라 거래정보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제공한 날(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통보를 유예한 경우에는 통보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공한 거래정보등의 주요 내용, 사용 목적, 제공받은 자 및 제공일 등을 명의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제6조(벌칙) ① 제3조제3항 또는 제4항, 제4조제1항 또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다만, 금융회사등은 수사기관등이 해당 통보가 ①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증거 인멸이나 증인 위협 등 사법절차의 진행을 방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③ 질문·조사 등의 행정절차의 진행을 방해하거나 과도하게 지연시킬 우려가 명백하다는 이유로 통보유예를 서면으로 요청하는 경우에는 유예요청기간 동안 통보를 유예하도록 하고 있음.²⁾

○ 최근 3년간 금융거래정보 통보 건수 및 통보유예 건수는 점차 증가하는 추세로, 2022년 통보유예 건수는 85만 1,699건에 이릅니다.

[거래정보등의 통보 및 통보유예 건수]

(단위: 건)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상반기
통 보	1,067,333	1,138,116	1,178,528	1,309,495	713,904
통보유예	679,248	658,718	759,990	851,699	469,227

주: 금융감독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 금융회사등을 감독·검사하는 기관이 금융회사등으로부터 제출받은 해당 기간의 요구·제공·통보·통보유예 건수에 관한 통계를 취합하여 정리한 것임.

자료: 금융위원회, 금융거래정보 제공현황 분석보고서, 2023.12.

2)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의 통보) ① (생략)

② 금융회사등은 통보 대상 거래정보등의 요구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보의 유예를 서면으로 요청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유예요청기간(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유로 요청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유예요청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6개월) 동안 통보를 유예하여야 한다.

1. 해당 통보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해당 통보가 증거 인멸, 증인 위협 등 공정한 사법절차의 진행을 방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3. 해당 통보가 질문·조사 등의 행정절차의 진행을 방해하거나 과도하게 지연시킬 우려가 명백한 경우

③ 금융회사등은 거래정보등의 요구자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지속되고 있음을 제시하고 통보의 유예를 서면으로 반복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받은 날부터 두 차례만(제2항제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매 1회 3개월의 범위에서 유예요청기간 동안 통보를 유예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1항 제2호(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 등의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자가 통보의 유예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을 받은 때부터 그 날부터 6개월의 범위에서 유예요청기간 동안 통보를 유예하여야 한다.

- 그러나 통보유예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수사기관 등이 판단하고 있어 그 사유에 대한 객관적 검증 없이 통보유예가 남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개정안은 수사기관 등이 미리 법원의 허가³⁾⁴⁾를 얻어 거래정보 제공사실의 통보 유예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명의자의 알권리 등을 보호하고, 통보유예제도의 남용을 방지하며, 공정성 및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거래정보등 요구자인 경찰청, 감사원 등은 수사기관 등의 통보유예 요청만으로 금융거래정보 명의인의 법적 지위나 권리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개정안에 따른 경우 신속한 조사를 필요로 하는 회계 부정 사건 등에 대한 조사 지연 가능성과 함께 조직적 증거 인멸 또는 도피 등이 용이해져 수사기관 등의 원활한 수사·감사 등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함.
- 아울러, 2022년 통보유예 건수가 약 85만건에 이른다는 점에서, 이를 모두 법원의 허가를 얻어 요청하도록 할 경우, 법원의 업무부담이 과중해질 수 있는 측면도 있음.

3) 특정한 행위나 절차를 진행하기 위하여 법원이 부여하는 승인

4) 「상법」 상 간이합병시 존속회사의 주주총회 승인 생략에 대한 허가, 자기주식 취득을 위한 주주 외의 자에 대한 양도 허가, 「민사소송법」 상 소송비용 담보 면제 허가, 소송구조 신청에 대한 허가, 문서제출명령에 대한 허가, 「형사소송법」 상 구속영장 발부 허가, 보석 허가, 압수수색 영장 발부 허가, 「가사소송법」 상 부부 공유재산 분할에 대한 허가, 친권자 지정 변경에 대한 허가, 기타 법률상 파산관재인에의 특정행위에 대한 허가,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 재결에 대한 허가 등이 있음.

□ 따라서 통보유예시 법원의 허가를 얻도록 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 보호 측면과 법원의 허가 절차 신설로 인한 수사 및 조사 등의 지연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아울러, 통보유예건수 중 절반⁵⁾을 차지하는 수사기관 등은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기 위해 법원의 영장 발부 허가를 얻을 때 통보유예에 대한 허가도 함께 받도록 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임

문 의 처
02)6788-5104

5) 법원 및 검찰 등 수사기관 통보유예건수는 2022년 총 41만 9,809건으로, 전체 통보유예건수 85만 1,699건의 49.3%를 차지함.